

선수위원회 규정

목 차

제1조(목적)	1
제2조(기능)	1
제3조(구성)	1
제4조(위원의 임기)	2
제5조(위원의 해촉)	2
제6조(위원의 직무)	2
제7조(회의의 소집)	2
제8조(위원의 제척 및 기피)	2
제9조(수당 등)	2
제10조(비밀준수의무)	2
제11조(언론 대응)	2
제12조(적용 규정)	3
부칙	3

선수위원회 규정

제 정 2018. 8. 1.
개 정 2022. 2. 24.
개 정 2023. 2. 2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(이하 “도핑방지위원회”라 한다) 「정관」 제37조제 2항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방지 활동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선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며,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02.21.>

제2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 응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한다. <개정 2023.02.21.>

1. 올림픽 · 패럴림픽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와 국내대회 관련,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과 스포츠 정신의 보급 · 확산 및 도핑방지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사항
2. 세계도핑방지기구(WADA) 선수위원회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
3. 도핑방지정책 관련 제안 및 권고에 관한 사항
4. 도핑방지 프로그램 시행 관련 선수의 권익 보호, 증진에 관한 사항
5. 도핑방지활동과 관련된 사항
6. 기타 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

② <삭제 2023.02.21.>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 이하를 포함하여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.02.24., 2023.02.21.>

② 위원은 선수 또는 선수 출신자 중에서 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3.02.21.>

1. <삭제 2023.02.21.>

2. <삭제 2023.02.21.>

3. <개정 2022.02.24.> <삭제 2023.02.21.>

③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02.24., 2023.02.21.>

1. 위원 중 과반수는 올림픽 · 패럴림픽 종목의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선수 중에서 위촉한다.
2. 위원은 1개 종목에서 1명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.
3. IOC · IPC · WADA 선수위원회의 위원과 OCA · APC 선수위원회의 위원은 우선순위로 위촉할 수 있다.
4. 「정관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5.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6. 「세계도핑방지규약(World Anti-Doping Code)」에 따른 제재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.

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22.02.24., 2023.02.21.>

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위원회 담당 직원으로 한다.
<개정 2022.02.24., 2023.02.21.>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) 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2. 질병, 장기간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<개정 2023.02.21.>
3. 법령위반,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4.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<신설 2023.02.21.>
5. 제10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<신설 2023.02.21.>

제6조(위원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. <개정 2022.02.24.>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22.02.24., 2023.02.21.>

④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2조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다음 각호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. <개정 2023.02.21.>

1. 현장교육을 포함한 도핑방지교육 활동
2. 도핑방지위원회가 주최·주관하는 각종 행사
3. 도핑방지위원회의 사업과 관련한 홍보활동
4. 기타 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업

⑤ <삭제 2023.02.21.>

제7조(회의의 소집) 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, 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22.02.24., 2023.02.21.>

②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은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3.02.21.>

제8조(위원의 제척 및 기피) ① 위원이 당해 자문사항 및 활동사항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, 또는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. <개정 2023.02.21.>

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한다. <신설 2023.02.21.>

제9조(수당 등)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수당·자문료 및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3.02.21.>

제10조(비밀준수의무) ① 위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·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위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1조(언론 대응) 위원은 도핑방지위원회의 언론 관련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도핑방지과 관련한 인터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도핑방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02.21.>

제12조(적용 규정)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핑방지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23.02.21.>

부 칙 <2018. 8. 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도핑방지위원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 2. 24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도핑방지위원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3. 2. 2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도핑방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은 이 규정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.